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- 29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4. 22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상위 법령인 「도로법 시행령」 및 「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」에 따라 도로점용료 요율과 「도로법」 위반 과태료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도로점용료 요율인하 개정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가로판매대, 구두수선대는 0.01에서 0.007로 노점은 0.02에서 0.007로 인하 (안 별표 1 중 제7호)

나. 「도로법」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

- 「도로법」 제101조제2항제1호에 근거 「도로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등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된바,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
-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74조제1항의 별표 5 제2호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따로 정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

- 「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」 제9조의2의 시장이 영 제74조제1항의 별표 5중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는 상위법령에 따라,
- 「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」의 2011. 11. 3일 삭제되었던 제9조의2(과태료 부과·징수)의 “구청장이 영 제74조제1항의 별표 5중 제2호 나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”라고 본조신설 한다.
- 2011. 11. 3.일 삭제되었던 제9조의2(과태료 부과·징수)의 본조신설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1,500,000원으로 정하여 안 [별표 2] 로 신설하고자 함

3. 개정근거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 제3조, 제9조의2

4. 개정조례안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3. 3. 21. ~ 2013. 4. 10.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3. 4. 18)

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.

라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과태료 부과·징수) 구청장이 영 제74조제1항의 별표 5 중 제2호 나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별표 1 중 7. 노점·자동판매기·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점 용 물 의 종 류		기 준 단 위		점용료 (단위 : 원)
		점용단위	기간단위	
7. 노점·자동판매기·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	가로판매대, 구두수선대, 노점	점용면적 1m ²	1년	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
	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			토지가격에 0.02를 곱한 금액
	자동판매기 · 상품진열대			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

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과태료 부과기준(제9조의2 관련)

위반행위	근거법조문	부과기준	과태료 상한금액
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	법 제101조제2항제1호	점용면적 1m ² 이하 50,000원, 1m ² 초과하는 매 1m ² 이내마다 100,000원씩 추가	1,500,000원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적용례)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및 과태료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9조의2 삭제</p> <p>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(제3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bottom: 10px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 rowspan="2">점용물의 종류</th> <th colspan="2">기준단위</th> <th rowspan="2">점용료 (단위: 원)</th> </tr> <tr> <th>점용단위</th> <th>기간단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. 노점 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가로판매대, 구두수선대</td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점용면적 1㎡</td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노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토지가격에 0.02를 곱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별표 2 <신 설></p>	점용물의 종류		기준단위		점용료 (단위: 원)	점용단위	기간단위	7. 노점 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	가로판매대, 구두수선대	점용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	노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	토지가격에 0.02를 곱한 금액	(생략)	(생략)	<p>제9조의2(과태료 부과·징수) 구청장이 영 제74조제1항의 별표 5 중 제2호 나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</p> <p>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(제3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bottom: 10px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 rowspan="2">점용물의 종류</th> <th colspan="2">기준단위</th> <th rowspan="2">점용료 (단위: 원)</th> </tr> <tr> <th>점용단위</th> <th>기간단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. 노점 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가로판매대, 구두수선대, 노점</td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점용면적 1㎡</td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토지가격에 0.02를 곱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(제9조의2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위반행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근거 법조문</th> <th style="width: 30%;">부과기준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과태료 상한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</td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법 제101조 제2항 제1호</td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점용면적 1㎡ 이하 50,000원, 1㎡ 초과하는 때 1㎡이내마다 100,000원씩 추가</td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1,500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점용물의 종류		기준단위		점용료 (단위: 원)	점용단위	기간단위	7. 노점 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	가로판매대, 구두수선대, 노점	점용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	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	토지가격에 0.02를 곱한 금액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부과기준	과태료 상한금액	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	법 제101조 제2항 제1호	점용면적 1㎡ 이하 50,000원, 1㎡ 초과하는 때 1㎡이내마다 100,000원씩 추가	1,500,000원
점용물의 종류			기준단위			점용료 (단위: 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점용단위	기간단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. 노점 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	가로판매대, 구두수선대	점용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노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			토지가격에 0.02를 곱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(생략)		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점용물의 종류		기준단위		점용료 (단위: 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점용단위	기간단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. 노점 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	가로판매대, 구두수선대, 노점	점용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			토지가격에 0.02를 곱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(현행과 같음)		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부과기준	과태료 상한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	법 제101조 제2항 제1호	점용면적 1㎡ 이하 50,000원, 1㎡ 초과하는 때 1㎡이내마다 100,000원씩 추가	1,50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